



특허와 정보통신 표준화

류 동 현

통신심사담당관실 심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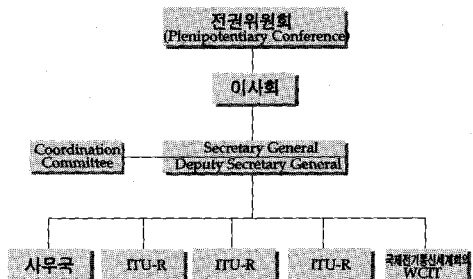
목 차

- I. 주요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 II.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 III. 국내에서의 정보통신 표준화
- IV. 문제점 및 대응방향

I. 주요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1. 주요 표준화기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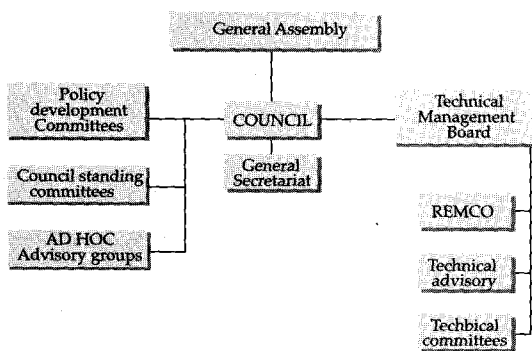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목적
 - 전세계를 대상으로 조화로운 총괄적 정보통신 표준화 작업수행
 - 연혁
 - 1865년 설립된 만국전신연합과 1906년 설립된 국제무선전신연합이 1932년 통합하였으며, 1947년 UN 전문기구가 됨.
 - 1992년 ITU-T, ITU-R, ITU-D 3개부분으로 개편하고 CCITT총회를 WTSC(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로 변경
 - 조직



- ITU-T는 전기통신표준화분야에 관한 것으로 CCITT를 확대개편하여 1992년 탄생,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및 14개 연구반들로 구성
- ITU-R은 전파통신분야로 주파수할당, 전파통신표준권고등을 하고있으며, 자문반(RAG) 및 8개 SG로 구성, IMT-2000표준은 SG8에서 담당
- IITU-D는 선후진국간의 전기통신 발전 조화 방안 연구 수행

□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목적
 - I국제무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 용역 등 산업 관련 세계표준화를 수행함.
- 연혁
 - I 1947년 유엔규격조정위원회(UNSCC)에 의해 발족
- 조직



- 총회, 이사회, 중앙사무국, 집행부등 11개 이사 및 기술위원회
- 국내활동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국립기술품질원)이 국가회원으로서 참여

□ IEC(국제전기전자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목적
 - 국제 전자기술표준의 조정 및 통일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전기 및 전자 산업(전력, 전자, 전기통신, 핵에너지)에 관한 국제 표준화를 수행
- 연혁
 - 1906년 정식발족, 비정부간 협의기구로 스위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며,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ECOSOC)의 자문기구
- 조직 : 이사회의 170개의 기술위원회가 활동
- 국내활동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회원으로 등록

□ ETS(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목적
 - 전기통신분야 유럽표준제정을 통해 통신장비 및 서비스부문의 공동시장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
- 연혁
 - 1987년 EC GREEN PAPER에서 새로운 통신표준기구의 설립이 주창되고, 1988년 유럽우정통신청회의(CEPT)에 의해 설립
- 조직
 - 총회, 사무국, 기술위원회로 구성
 - 28개 CEPT 국가의 행정책임자 및 주요망 운영자, 제조업자, 사용자, 민간서비스공급자, 연구기관등 300명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 기타

- IEEE(전기전자학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1963년 설립된 학회로 정보기술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참여하



는 27만여명의 회원이 있음.

- TTC(전신전화기술위원회,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 미, 일간의 통상마찰 해결과 전기통신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자간 상호접속 확대를 위해 1985년 설립된 민간 표준화기구
- T1 Committee
 - 1984년 전기통신망의 상호접속성 및 운용성 확보를 위해 설립
 - 현재10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ETRI가 읍저버로 가입
- IETF(인터넷 기술작업반,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의 설계, 구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IAB (Internet Architecture Board)의 하위 연구수행기관으로 1986년 설립
 - TCP/IP를 비롯한 인터넷 프로토콜, 절차개발 및 표준화 작업
- ATM Forum
 - ATM UNI 표준을 목적으로 북미 35개 회원사가 1991년 창설
 - 현재 전세계 주요 LAN회사, ETRI, KT, 삼성등이 참여중
-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1998년 유럽 ETSI, 미국 T1, 한국 TTA, 일본 ARIB, TTC등 표준화 단체들이 GSM을 바탕으로한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결성
 - 국내 전파연구소, 삼성전자가등이 참여
- 3GPP2
 - 1999년 미국 TIA, 일본 ARIB, TTC, 한국 TTA가 ANSI-41핵심망과 CDMA 2000을 바탕으로 한 이동통신 표준화를 위해 결성

- 국내에서는 ETRI, LGIC, SKT, 삼성전자가등이 참여

2. 주요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 ISO/IEC JTC1
 - 국제표준화 활동지침서 제10.3 특별고려사항 중 특허부문, JTC1지침 제2부 5.7 및 부록A
 - 기술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체기술이 없더라도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국제표준을 인정
 - 지적재산권이 확인되지않으면 “이 국제표준의 요소중 일부는 지적재산권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본 기구는 이를 확인할 책임을 지지않는다.” 라고 경고
 - 표준제안자 또는 표준화 과정의 참여자는 알고 있는 지적재산권정보를 위원회에 고지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하며, 제안자는 지적재산권자에게 권리를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허여한다는 약속서를 요청하고, 사무국이 이를 보관함.
 - 약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사회에 인증없이 는 표준화가 진행될수 없으며, 약속서가 제출 될 경우 실시계약은 당사자간 협상에의해 표준 기구 밖에서 이루어짐.
 - 국제표준 공표이후 지적재산권이 드러나면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받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위원회에 회부
- ITU-T
 - 1976년 제6차 CCTTT총회 : 무상 라이선스는 채택하기 어렵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84년 CCITT Patent Policy : 각 구성원은 심의 중인 표준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 계약이 안되면 표준안의 철회를 요청할수있음.

○ 1987년 A Statement on CCITT Patent Policy: 표준은 모든 이용자의 공익을 위하여 모든자에게 이용가능하게 되어야하고, 특허권자에 의한 배타적인 상업상의 권리 남용이 없어야되며,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되지 않을 경우 표준이 될 수 없다.(총회에서 정식 채택된 것은 아님)

○ 1996년 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 : 권고안을 제안하는 자는 지적재산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권리자는 서면으로 권리포기 또는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락조건의 교섭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성명서 미제출시 대응은 권고되지 않았음)

□ ETSI

○ ETSI는 1989년 이후 지적재산권협약서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표준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강제면허를 추진하였으나 지적재산권법과 불일치한다는 반론 때문에 거절됨.

○ 1991년 협약서 초안은 표준작업반대 의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적재산권만 강제면허 체계속에 포함토록 하였으나, IBM, MOTOROLA 등 대기업 집단의 강한 반발 초래

○ 1993년 ETSI 총회는 “지적재산권 정책”을 2년간 임시규정으로 승인

- 생산자, 관련사들은 표준관련 지적재산권을 ETSI에 통지하고, 지적재산권을 확인하고, 최

대 로알티율을 통지할 의무

- 지적재산권자는 기술총회에서 표준승인후 180일 이내에 면허거절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기술총회는 대안을 찾고, 권리자에 재고를 요청하여 거절되면 EC 위원회에 회부하며, EC위원회는, EC관할지역내에서의 면허를 보장함. (당사자간에 3개월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재로 해결)

※ 지적재산권의 표준화 과정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하나 지나치게 소유권자의 권리를 제약하여 강제화하는데 대해 강한 비판제기.

○ 1997년 “지적재산권 정책” 발표

- 각회원은 지재권을 ETSI에 알려야하고, 제안회원은 회원사의 필수지재권에 대해 ETSI에 주의를 환기시켜야함. 그러나 회원사가 지재권을 조사하는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님.

- 표준관련 지재권이 확인되면 사무총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면허를 허용한다는 문서협약서를 3개월내에 제출토록 요청

- 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총회는 대체기술을 검토하고 대체기술이 없을 경우 표준활동을 중지하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적절한 위원에게 해결책을 찾도록 요청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EC에 표준불인정을 포함한 대응책 요청.

□ ANSI

○ 미국국가표준의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절차

- 제1.2.11조 : 특허를 포함한 표준도 기술적인 이유로 정당화된다면 인정

- 제1.2.11.1조 : 표준을 승인하기전에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특허를 가질 의도가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권리포기서를 제출하거나, (1) 무료실시하여 또는 (2) 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차별이 없는 라이선스가 가능하다는 확



인서를 받아야 함.

- 1.2.11.2조 : 특허권자의 진술서는 파일에 비치 보관
- 1.2.11.3 :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표준에 이를 고지
- 1.2.11.4 : ANSI는 표준에 특허권이 포함되었는지 조사하거나 유효성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음.
- ANSI 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표준심사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표준승인후 이의심판부의 결정에 의해 승인취소될수 있음.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되어 기술개발 노력이 약화됨.

2.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의 강제실시권 적용가능성

※ 특허법 제107조1항3호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허법 제107조1항4호 :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하는 자는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II.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1. 표준화와 특허의 내재적 갈등

- 특허제도는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화는 기술의 사회적 확산 및 상용화를 통한 보급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서 표준화는 소비자 지향적인 것으로 기술공유화를 통해 경쟁과 교역을 증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시키고 있는데 반해, 특허는 생산자 지향적인 것으로 기술혁신의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창조적 발명을 장려하고 있음.
- 따라서 특허와 표준은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게되는데, 독점배타적인 특허권리가 강조되면 표준화를 지연시키거나 불가능하게하여 기술확산을 막고 독점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표준화가 강조되어 특허권이 약화되면 발명의욕이 저하되고

- 재정요건 (공공의 이익, 비상업적 실시, 불공정거래행위)
- 본조항은 UR/TRIPS 제31조를 반영한 것으로 동 협정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실시를 허용할 경우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불명확하고 남용의 우려가 있는 강제실시권 설정을 배제하기위한 취지로 만들어 짐.
- 합리적인 조건하에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을 상당기간 지속하고, 실패시에만 허용(긴급사태,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은 예외)
- 사법상 혹은 행정상 절차의 결과로 반경쟁적 행위를 시정할 경우
- 특허권자는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함
- 강제실시 결정의 유효성은 각국 사법심사 결과에 복종 등
-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일본 산업재산권심의회 "재정제도의 운용요령"에 의하면 (1)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전, 공공시설의 건설등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분야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산업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

국민생활에 실질적 폐해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자심의 전문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1) 기업의 도산등 혼란이 발생함에 의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2) 기업의 도산등이 발생해 거액의 기존설비가 폐기될 염려가 있을 경우 (3) 기업도산등 혼란발생에 의해 사업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거부차제는 문제되지 않지만 시장지배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1. 부당하게 去來를 거절하거나 去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
3. 부당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強制하는 행위
4.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행위
5. 去來의 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拘束하는 조건으로 去來하거나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
6. 事業者, 商品 또는 用役에 관하여 허위 또는 消費者를 欺騙하거나 誤認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廣告(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6. 削除 <99·2·5 法 5814> <<施行日 99·7·1>>
7. 부당하게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에 대하여 假支給 金·貸與金·人力·不動產·有價證券·無體財產權등

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去來하여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를 지원하는 행위

8. 第1號 내지 第7號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시행령 제36조1항에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상세한 유형 및 기준 제시

* 국제계약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공정위 고시 1997-23)

○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실시허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 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특허법 하에서도 제한적으로 강제실시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 특허법에 강제실시권 규정이 없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강제실시권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등에서의 의약분야 강제실시권 제도가 EC재판소에서 효력이 부정되고 있으며, ETSI에서 강제실시권 설정노력이 실패하는 등 국제적 추세가 강제실시권 설정에 부정적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표준화 과정에서 실시권을 강제할 경우 대부분의 주요특허가 외국출원인 소유인점에 비추어 국제분쟁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행여부는 의문시됨.

3. 표준화 과정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

독점규제법 제59조 : 이 법률의 규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권리남용설

- 지적재산권의 권리행사를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와 그렇지 않은 행위로 이분하고, 비본래적 행사(가격제한, 구입처제한, 경쟁품취급제한, 품질제한, 개량발명제한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위조항을 문리대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질적으로 각국의 판례를 통해 지재권 행사에 대해 독점규제법등의 적용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임.

나.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과 반독점법

○ 1995년 미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 시장지배력 자체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라이선스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일뿐으로 일반적인 재산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더라도 반독점 체계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지식재산권과 시장지배력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크로스라이선싱, 양도 및 이전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며, 반독점법이 불필요하게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 DELL 컴퓨터 사건

○ DELL사는 VESA의 회원사로 1992년 "VESA 로컬버스"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VESA는 참여회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확인하였는데 DELL사는 "표준안이 DELL사의 어

떠한 지재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표준승인후 VL버스가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자 DELL사는 VESA 회원사에게 표준이 1991년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경고함.

○ FTC는 예비화해조서에서 "만약 표준제정구에 자신의 특허권을 올바르게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표준기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특정 표준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였다면, 그러한표준으로부터 얻어지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불공정경쟁의 금지를 규정한 FTC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판시

○ DELL사는 VL버스에대해 특허권 침해 주장을 하지않겠다고 FTC와 합의하고, 향후 10년 동안 (1)표준제정과정에 참여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따를것이며, (2) 만약 표준제정기구가 서면으로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에 포함된 자사의 특허를 고의로 밝히지 않는다면 그 표준을 실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특허권 행사를 경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체결, 1996. 1. 12. FTC 최종 화해조서 발표.

□ WANG V. MITSUBISHI 사건

○ 1983년 WANG사의 Clayton은 SIMM 기술 발표회를 가지고, 자사는 SIMM 모듈을 생산하지 않을것이며 타업체들이 SIMM을 생산토록 장려하고 이를 전적으로 구매할 계획임을 발표, 또한 특허와 관련하여 자사는 특허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으며 SIMM모듈제조업체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제3자에게 판매할수있음을 공표.

○ 1983년 9월 WANG은 JEDEC에 SIMM을 제안하고 산업표준으로 제정할 것을 설득하여 1986년 표준으로 채택됨.

○ 미쓰비시는 1983년 WANG과 접촉하고 1987

년부터 SIMM을 대량생산하여 WANG사에 공급하였으나 특허권, 로열티,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음.

- 1983년 9월 WANG은 SIMM(Single in line Memory Modules)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1987년, 1988년 2건 특허받음. 1989년 WANG은 미쓰비시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1992년 침해소송 제기.
- CAFC는 미쓰비시가 법률적 금반언 원칙에 의한 법정실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입증해야한다고 함.
 - 양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 그 관계내에서 WANG은 미쓰비시에 SIMM 발명 사용권을 허여
 - WANG은 그러한 허여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 WANG은 미쓰비시가 법정실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불인정한 사실
 - WANG의 진술서와 행위로 미루어 발명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짐작되게 하였다는 사실
- 지방법원과 CAFC는 WANG이 미쓰비시로부터 받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인정함.
 - 미쓰비시는 대량공급과 가격하락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SIMM 구매자인 WANG에게 이익을 제공
 - 미쓰비시는 SIMM을 WANG 이외의 업체에 판매해도 된다는 1983년 6월 발표에 따라 WANG에 납품하는 SIMM 모듈이 주문생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자비로 개발 및 생산 장비 구축을 함.
 - 미쓰비시는 WANG의 요구대로 SIMM 설계를 변경하였고, 미쓰비시의 생산참여로 인해 시장규모가 커졌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산업표준으로 채택될수 있었음.
- 결과적으로 CAFC는 1997년 WANG사가 산

업표준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행위로 인해 미쓰비시사에 무상으로 영구적인 법정실시권을 허여해야 한다고 판시(103 F.3d 1571 (Fed. Dir.), cert. denied, 118 S.Ct.69(1997))

□ 기타

- Potter Instrument v. Storage Technology 사건의 경우 특허권자의 대표들이 관련 표준을 검토하는 ANSI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자사의 특허권 관련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표준제정후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의무태의 법리를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기타 미국의 판례에서도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였으면서도 자신의 특허권 관련사항을 공표하지않고 표준제정후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침묵은 그가 특허권 주장을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Strambler v. Diebold (1988), Stryker v. Zimmer(1990))

III. 국내에서의 정보통신 표준화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1988년 전기통신기본법30조에 의해 설립되어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작성 보급, 관련 국제기구 연계체제 및 국내 연구단 구성운용 등을 담당
-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
 - 표준안 제안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련 지적권을 인지한 경우 협회총장에게 통보
 - 협회총장은 관련 지적권의 통보가 있거나 인지한 경우 권리자에게 30일 이내에확약서 제출요청(무료실시 또는 합리적조건하에서 비차별적 실시)



- 표준안과 협약서를 표준총회에 상정하여 심의 하며, 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표준화 추진 중단
- 표준관련 지재권의 검토 및 협상을 위하여 관련조직 구성운영
- 표준제정이후 관련 지재권이 발견되면 협약서 제출을 요청하며, 제출되지 않을 경우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추진

2. 기술표준원

- 특허권등을 포함하는 규격의 KS화 절차 (KS A 0001 : 1997 부속서5)
- KS안의 작성을 위탁받은 자는 관련특허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첨부하고 권리자의 협약서 제출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산업표준심의회에서 해당 특허권이 표준에 포함된다고 인정되면 사무국은 권리자에게 협약서 제출을 요청
- 권리자의 협약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회는 의결할수 있음.
- KS 제정이후 특허권등에의해 KS이용에 지장이 생길경우 필요에 따라 표준의 개정을 추진

※ ISO/IEC 지침에 기초하여 만들어 졌으며, KS가 ISO/IEC 규격과 동등할때는 특허권자의 확인서 제출절차 없음.

3. 표준화 추진사례

가. 디지털 이동통신 표준제정(1995)

- 디지털 이동통신(PCS) 표준으로 TDMA 방식과 CDMA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한국통신 데이콤등이 주축이 된 TDMA 진영은 유럽표

준인 GSM/DCS 1900 방식을 주장하였고, 한국이동통신, ETRI등은 CDMA 방식을 주장

- GSM 특허권자인 에릭슨사등은 선급급 900만달러, 1%이하의 기술료를 요구하였으며, CDMA 특허권자인 쉘컴사는 선급급 4,800만달러, 6% 기술료를 요구
- TDMA 방식은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여 상용화 되어 있기때문에 즉시 도입하여 실시할수 있으나 CDMA 방식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CDMA 기술자체의 우수성과 미래 통신방식을 선점한다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CDMA 방식이 표준으로 채택되어 세계최초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나, 매출액의 5.75% 이상에 이르는 기술료 부담은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을 받게됨.

나. 고속무선호출 표준제정(1997)

- TTA산하에 고속무선호출전담반을 구성하여 표준검토 및 로열티협상을 전담하였으며, 미모토롤라의 "FLEX", 네델란드 필립스사의 "APOC", 핀란드 테크노만사의 유럽표준 "EREMS"를 대상으로 선정작업실시.
- 3개사의 경쟁관계를 이용함으로써 3사는 프로토콜 완전공개, 국내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보장, 해외수출시 로열티 공제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용화되었으며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내판매시에 기술료면제, 수출할 경우 3%의 기술료 조건을 제시한 모토롤라 FLEX를 표준으로 채택.('97.3.21)
- 모토롤라 소유 11개 특허에 대해 비배타적 합리적 조건의 협약서가 제출('96. 5)되었고, TTA와 모토롤라간 양해각서 체결('97.2)

IV. 문제점 및 대응방향

1. 표준화 추진시 문제점

- 표준화 과정에서 권리자는 특허성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효력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의 해석기준이 모호하기때문에 분쟁을 야기시킬 소지 있음.
- 표준화 과정에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는 강제되는 것이 아닐뿐만아니라 신속정확한 지재권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아 표준화 과정에서 지재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법령이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으며, 표준화 절차등 중요사항들이 고시사항으로 제정되어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지재권 관련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지않으며 개별적으로 독점규제법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

2. 향후 우리청 과제

- 표준화 과정에서의 지재권 처리절차등에 대해 국제기구의 대응방향을 파악하고 처리절차 기준을 제정하여 각 표준화 기구에 권고

- 특허맵 사업과 연계하여 국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안에 대해 관련 지재권을 조사하여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국익보호
- 표준화 추진에 의해 독점배타적인 지재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게 되므로 표준화와 관련된 강제실시권 설정등에 대해 특허법상에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WTO, WIPO등 국제기구의 협의에 적극 참여

3. 기업의 표준화 참여시 주의

-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은 주요표준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표준화 작업과정에서의 지재권 공개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임.
- 그러나 표준화 작업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관련된 보유지재권을 공개하지않을 경우 해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지재권 권리행사가 제한당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구로부터 표준안 의견조회등을 받을 경우 보유 지재권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공개하여야하며,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더 요구됨.

〈특허청 수요아카데미〉

발행 2000 · 11

